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 흠 제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성흠제 의원입니다.

지난 4월 3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년 10월부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도입되었고,
‘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현행 조례에 따른 ‘지진안전성 표시제’가 상위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사유는 법 제16조의3제4항에

행정안전부가 행하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이외의 어떠한 인증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도 불허하고 있어 현행 조례를 존치시킬 경우 상위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또한, 기존 ‘지진안전성 표시제’ 시행 시에는 표시 발급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있었으나 행안부의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시행 후에는 지자체의 역할이 사라짐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